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의안 번호	2248
----------	------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I . 제안경위

-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1)에 따라 11월 9일에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2)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이하 ‘공제기금’ 이라 함)으로 같은 법 제15조3)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같은 법 제54조4)에 따라 관리·운용하는 기금임

〈표 2-1〉 공제기금 설치현황

기금명	설치연도	근거법령	설치목적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0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 공제급여 충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1. 기금총괄

- 2018년도 동 기금의 조성규모는 79억 5,500만원으로 2017년도 조성규모(101억 8,500만원)보다 △21.9%, △22억 3,000만원 감소한 규모임

〈표 2-2〉 2018년도 공제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A)	2018년도		2018년도말 조성현재액 (B=A+㉠-㉡)	증 감	
		수입㉠	지출㉡		금액 (C=B-A)	비율 (C/A)
학교안전공제 및 사 고 예 방 기 금	10,185	6,334	8,564	7,955	△2,230	△21.9

- 2018년도 기금수지총액은 165억 1,900만원으로 2017년도 (177억 9,900만원) 대비 △7.2%, △12억 8,000만원 감소함

〈표 2-3〉 2018년도 공제기금 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018년도	2017년도	증 감		항 목	2018년도	2017년도	증 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6,519	17,799	△1,280	△7.2	합 계	16,519	17,799	△1,280	△7.2
전 입 금	5,951	5,672	279	4.9	비용자성 사업비	7,017	6,289	729	11.6
보 조 금	21	1,857	△1,836	△98.9	인 문 영 비	1,071	929	142	15.3
예치금회수 (잔이월금)	10,185	9,954	231	2.3	기 본 경 비	475	396	79	20.0
이자수입	192	146	46	31.5	예 치 금 (차이월금)	7,955	10,185	△2,230	△21.9
기타수입	170	170	0	0.0					

2. 기금수지현황

(1) 수입계획

- 2018년도 수입계획은 165억 1,900만원으로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 101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공제로 수입, 보조금(지원금), 소방수익, 학교폭력구상금회수, 이자수입 등 2018년도 수입금 63억 3,400만원으로 구성됨

〈표 2-4〉 2018년도 공제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항 목	세 부 내 역	2018년도(A)		2017년도(B)	증 감	
			구성비		금액(C=A-B)	비율(C/B)
합 계		16,519	100.0	17,799	△1,280	△7.2
전 입 금	공제로 수입	5,951	36.0	5,672	279	4.9
보 조 금	소 계	21	0.1	1,857	△1,836	△98.9
	공제급여 지원금	0	0.0	1,672	△1,672	△100.0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로 지원금	21	0.1	18	3	16.7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0	0.0	168	△168	△100.0
예치금회수	전기 이월금	10,185	61.7	9,954	231	2.3
이 자 수 입	이자수입	192	1.2	146	46	31.5
기 타 수 입	소 계	170	1.0	170	0	0.0
	소방수익	120	0.7	120	0	0.0
	학교폭력구상금회수	50	0.3	50	0	0.0

- 공제로 수입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⁵⁾에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

따라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6)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공제급여의 지급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단가7)를 결정하는 바,
- 2018년도의 경우 학생수는 감소(△69,975명)하였으나 공제료 단가(평균 523원) 인상으로 2017년도 대비 4.9%, 2억 7,900만원 증가하였음

〈표 2-5〉 공제료 수입 및 학생수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연 도	당해연도 수입(A)		당해연도 공제료 수입(B)			학생수 (산출내역 기준)		공제료 단가 평균 (원)	
	전년대비 증 감		구성비 (B/A)	전년대비 증 감		전년대비 증 감		전년대비 증 감	
2018	6,334	△1,512	5,951	94.0	21.7	983,493	△69,975	5,688	523
2017	7,846	1,876	5,672	72.3	△23.8	1,053,468	△33,416	5,165	295
2016	5,970		5,734	96.1		1,086,884		4,870	

※ 2017~2018년도는 기금운용계획서 기준이며, 2016년도는 결산서 기준임

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제료) ④ 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공제료 산정기준

- 7)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수입계획 기준 단가(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

구 분	유	초	중	고	평균
2018년도(공제회 계획)(A)	2,050	3,750	7,600	9,350	5,688
2018년도(교육부고시)	1,950	3,390	6,890	8,550	5,195
2017년도(B)	1,940	3,370	6,840	8,510	5,165
증감액(C=A-B)	110	380	760	840	523
증감율(C/B)	5.7	11.3	11.1	9.9	10.1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2,100만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8)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제료 지원금을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이며
- **소방수익**은 1억 2,000만원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10)에 따라 공제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 사업에서 발생한 바, 이를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2. 생략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3(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2) 지출계획

- 2018년도 지출계획은 165억 1,900만원으로 예치금 79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10억 7,100만원), 기본경비(4억 7,500만원) 및 비용자성사업비(70억 1,800만원)로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있음

〈표 2-6〉 2018년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항 목	세 부 내 역		2018년도(A)		2017년도 (B)	증 감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6,519	100.0	17,799	△1,280	△7.2
비용자성 사 업 비	소 계		7,018	42.5	6,289	729	11.6
	공 제 사업비	소 계	6,059	36.7	5,793	266	4.6
		공제급여 (사고보상비)	5,883	35.6	5,617	266	4.7
		소송및의료자문	146	0.9	146	0	0.0
		보상심사위원회	30	0.2	30	0	0.0
	예방사업비		678	4.1	208	470	226.0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60	1.0	167	△7	△4.2
	학교폭력피해지원		120	0.7	120	0	0.0
인 력 운 영 비	소 계		1,071	6.5	930	141	15.2
	급 여		884	5.4	790	94	11.9
	수 당		187	1.1	140	47	33.6
기 본 경 비	소 계		475	2.9	396	79	20.0
	업무추진비		33	0.2	30	3	10.0
	일반운영비		442	2.7	366	76	20.8
예 치 금	차기 이월금		7,955	48.1	10,185	△2,230	△21.9

- 2018년도 **예방사업비**는 2017년도(2억 800만원) 대비 226.0%,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6억 7,8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학교손상감시체계 구축¹¹⁾ 및 공제회 급여관리시스템 개선¹²⁾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이 신규 편성하여 증액된 것으로 확인됨
- 기금 수입(63억 3,400만원)보다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85억 6,400만원)이 많아 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이 대폭(△22억 3,3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금 감소 최소화를 위하여 공제회에서는 수입 확대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난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편성 항목 부적정성**¹³⁾을 지적하였음에도 2017년도와 동일하게 기본운영비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부적정 편성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개선이 강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1) 학생들의 사고와 손상 현황에 따른 자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여 학교안전실태 진단과 안전정책의 기획·평가 및 각급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

12) 교직원 업무 경감 및 학부모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기존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미비점 보완

13)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편성 항목 : 기본경비(일반운영비) → 인력운영비(법정부담금)

- 근거 :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기준 p.102 (교육부, 2017.9.)

· 인력운영경비 : 인건비, 직급보조비, 공무원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법정부담금, 인건비지원을 모두 합한 금액

※ 2017년도 기준도 동일